

베트남 세무 및 관세 뉴스

2020 년 11월



주목할 만한 내용:

조세관리

1. 2021년도 세무 조사/감사 계획 수립을 위한 재무부의 지침;

개인 소득세 (PIT)

1. 새로운 부양가족 공제 기준으로 PIT 신고 및 HTKK 소프트웨어;
2. 격리 비용은 PIT 과세 대상임;
3. 근로계약 없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PIT;

법인 소득세 (CIT)

1. 과세연도가 역년과 다르게 적용한 기업에 대해 2020년 CIT 30% 감면 적용;
2. Covid-19 로 인한 급여 비용 및 기타 비용에 대한 CIT 정책;
3.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해 계약 중단 시 근로자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에 대한 CIT 정책;

부가가치세 (VAT)

1. VAT 부과된 제조품 및 VAT 면제된 제조품에 대한 투자가치가 분리할 수 없는 경우 사업양도시 총액에 VAT10%가 부과됨;

외국인 계약자세 (FCWT)

1. 보세창고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FCWT;
2. 외국인 계약자의 온라인 교육과정 제공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FCWT;

무역 및 관세

1. 수출가공계약의 하도급 가공품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2. 재고차이에 대한 수입 관세/VAT;
3. EVFTA가 발효되기 전에 수출된 상품에 대한 EUR.1양식으로 CO 신청 서류 검토

01

조세관리

02

개인 소득세

03

법인 소득세

04

부가가치세

05

외국인 계약자세

06

무역 및 관세



조세관리



종합 정보

첫 10개월 세금 징수현황 및 주목할 만한 사항:

첫 10개월의 세금 징수현황

첫 10개월에 총 국고예산의 징수액은 VND 979,724 billion 달성했으며 2020년 계획대비 78.1% 및 2019년 동기대비 93.9%에 해당한다.

세무 조사/감사 현황

2020년 첫 10개월 동안 모든급의 조세당국은 납세자의 사업장에서 60,748 케이스 감사/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521,605 부의 세금 신고서류를 검토해 왔다. 세무 감사/조사를 통해 부과세액은 VND 51,308.7 billion을 달성했으며 2019년 동기 대비 115.9%에 해당한다. 그중에는:

- 세금 징수액 증가: VND 15,246.1 billion을 달성했으며 2019년 동기 대비 124.96%에 해당함;
- 국가예산에 납부된 총 세금 징수액: VND 8,052.7 billion을 달성했으며 2019년 동기 대비 100.12%에 해당함;
- 이전가격 감사: 263 기업의 감사를 통해 VND 4,190.71 billion의 과세 소득 증감 및 VND 9,042.61 billion의 손실 줄임을 달성함.

2020년도 연말에 세무 조사/감사 계획 수립을 위한 재무부의 지침

- 세금징수, 세금 손실 줄임, 이전가격에 대한 관리 강화함;
- 세금징수 및 기타 징수(예: 연체이자, 과태료 등)를 처리에 대해 강화하고, 세금환급의 경우를 엄격히 심사함;
- 세무 조사/감사 강화, 특히 세무 조사/감사를 받았으나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기업에 초점을 맞춤;
- 세무상 행정수속, 정책, 특히 전자거래 활동을 위한 조세관리에 대해 개발하고 완성한다. 최근에 정부는 조세관리법 및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지침을 규정하는 제123/2020/ND-CP호, 제125/2020/ND-CP호, 제26/2020/ND-CP호 시행령 및 이전가격에 대한 제20/2017/ND-CP호 시행령을 대체하는 제132/2020/ND-CP호 시행령을 발표하였음.

2021년도 세무 조사/감사 계획 수립을 위한 재무부의 지침

재무부의 지침에 따라 세무총국 및 관세총국은 2021년도 세무조사/감사의 계획을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주목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무:

- 세무위험이 높은 기업;
- 세금손실 및 세무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세무 감사/검사 수행;
- 세금 징수액이 높은 기업;
- 특정 산업 (예: 온라인 사업, 다단계 판매, 게임 사업, 자본/브랜드/프로젝트의 양도거래가 있는 기업);
- 이전가격: 특수관계자와 거래의 비중이 크거나 수년간동안 손실을 인식하거나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과 대비 보고이익이 낮은 기업

관세:

- 관세 및 세무법 준수의 감사/조사를 수행;
-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을 감사 수행:
 - 통관 후 관세 및 조세에 관한 서류의 감사기한이 초과한 기업, 또한 현장에서 감사를 받았으나 위반행위를 발견된 기업;
 - 외국기업에 수출품을 생산, 가공을 위한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
 - 세금 면제분야에 위험이 높은 기업;
 - 제57/2020/ND-CP호 시행령, 제1.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조립 및 자동차 부품을 제조를 위한 수입된 부품에 대한 수입관세 환급 받은 기업.

(2020년 10월 22일 재무부의 제12997/BTC-TTr 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개인 소득세



지침 문서

신규 부양가족 공제 기준으로 PIT 신고 및 HTKK 소프트웨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신규 부양가족 공제기준을 적용에 대한 제954/2020/UBTVQH14호 결의에 맞춰진 HTKK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버전이 개발된 것에 대해 하노이 세무국이 세무총국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시스템상 자기공제 기준은 VND 11mil 및 부양가족은 일인당 VND 4,4mil씩으로 적용된다.

하노이 세무국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했다. 따라서 외국인의 베트남에 입국한 첫날 이후 12개월 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첫 과세 산출연도는 역년에 의해 확정되지 않고 베트남에 입국한 첫날부터 연속적인 12개월로 확정된다. 둘째 해부터 과세산출기간은 역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확정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0년 10월 26일 제93619/CT-TTHT호 OL)

격리 비용은 PIT 과세 대상임

기업이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전문가를 위해 법규정에 따라 Covid-19 대유행 중 격리에 대한 비용을 발생한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기록상 외국인 근로자의 이름을 명확하게 명시되면 제111/2013/TT-BTC호 시행규칙, 제2.2.조 3.2항에 따라 PIT 과세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0년 11월 10일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근로자에 지급한 비용에 대한 CIT 및 PIT 과세를 안내하는 제 97748/CT-TTH OL)

근로계약 없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PIT

회사가 근로계약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VND 2mil 또는 그 이상의 급여, 기타 소득등을 지급할 때마다 제111/2013/TT-BTC호 시행규칙, 제25.1.1조의 규정에 의해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상태에 따라) 10% 또는 20% PIT를 징수하여 지급한다.

연말에 외국인 근로자가 제92/2015/TT-BTC호, 제21조 시행규칙에 따라 PIT확정 신고를 위해 해당 연도의 모든 소득을 합쳐야 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0년 10월 09일 외국인의 PIT에 대한 제 89926/CT-TTHT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법인 소득세



지침 문서

외국투자기업의 베트남-싱가폴 II 공단 (VSIP II)에 위치한 신규투자 프로젝트는 CIT 인센티브를 적용 받지않음

외국투자 기업은 2020년 4월 27일에 Binh Duong 공단 관리위원회로부터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허가서를 받아 투자당시에 지역별 인센티브에 해당하지 않은 Phu Hoa, Thu Dau Mot 시, Binh Duong 성의 VSIP II 공단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상기 사업은 재무부의 2014년 10월 10일 제151/2014/TT-BTC 호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된 CIT 인센티브를 적용 받지 못한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0년 10월 28일 제/24296/CT-TTHT 호 OL)

과세연도를 역년과 다르게 적용한 기업에 대해 30% CIT 감면 적용

기업은 2020년의 과세연도에 VND200mil 미만인 총수익을 장출한 경우 30% CIT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기업의 과세연도가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적용한 경우 이기간은 2020년도의 CIT 감면을 적용하기 위해 정해진 기간이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0년 10월 27일 제/2424245/CT-TTHT 호 OL)

2020년 3분기부터 임시 CIT 납부에 대한 30% 감면 적용

기업은 제114/2020/ND-CP 호, 제114조에 규정한 대상에 해당되며 동시에 2020년도의 총수익이 VND 200mil 미만인 경우 2020년도의 CIT 납부액에 대한 30%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기업은 2020년 감면 조건을 근거하여 제114/2020/ND-CP 시행령, 제2,3조 에 따라 2020년도의 분기별 임시 CIT 납부액 및 연말 확정 세액을 납부시 감면액을 자체 결정한다.

(하노이 세무국 2020년 10월 19일 제91813/CT-TTHT 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지침 문서



법인소득세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급여 및 기타 비용에 대한 과세정책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사회격리 혹은 업무를 기다리는 동안 휴직한 직원에게 급여, 수당, 급여 성격인 이익 및 기타 복리후생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재무부의 제96/2015/TT-BTC호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을 (제25/2018/TT-BTC호 시행 규칙 제3조에서 수정 보완되었음) 충족하면 비용인정이 가능하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0년10월09일 제89924/CT-TTHT호 OL)

Covid-19 대유행의 영향으로 인해 근로계약 임시 중단시 직원을 유지하기 위한 지급금에 대한 CIT 과세정책

Covid-19 영향으로 인해 근로계약의 임시 중단 기간동안 직원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에 대한 CIT 과세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그러한 비용이 직원 복지 또는 고용종료의 임금인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

상기 비용이 복지후생인 경우, 제96/2015/TT-BTC호 시행규칙 제4조의 조건 (복지 목적의 총비용은 기업 과세 연도의 실제 평균 급여의 1 개월을 초과하지 않음)을 충족하면 CIT 산정시 공제된다.

상기 비용이 퇴직금에 해당하는 경우, 제218/2013/ND-CP호 시행령 제9조의 조건을 충족하면 CIT 과세소득 계산 시 공제 가능한 비용이다.

(세무총국의 2020년09월28일 제4073/TCT-CS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지침 문서

VAT 부과된 제조품 및 VAT 면제된 제조품에 대한 투자가치가 분리할 수 없는 경우 사업양도시 총액에 VAT10%가 부과됨;

본 OL은 프로젝트 양도에 적용되며 사업의 각 개별 항목의 가치가 분리될 수 없는 경우 총가치의 최고 VAT세율을 적용하는 기본원칙을 근거한다.

(세무총국의2020년10월21일 제4433/TCT-CS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외국인 계약자세



지침 문서

보세창고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FCWT

외국 기업은 국제 운송, 환송, 보관 또는 가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세창고를 물품보관창고로 사용할 경우 베트남에서 (FCWT의) CIT 납부할 대상이 아니다.

외국 기업은 수출가공구역에 소재한 기업과 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생산 완제품을 납품 받은후 보세창고로 보내서 해외 고객에게 판매할 경우 해외에 수출하기 전에 보세창고에서 제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므로 외국 기업은 베트남에서 (FCWT의) CIT가 납부할 대상이다.

(세무총국의 2020년9월24일 제3997/TCT-CS호 OL)

외국인 계약자의 온라인 교육과정 제공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FCWT

해외에 본사가 소재한 회사 (외국인 계약자)는 베트남에 소재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도면 작성, 설계 등과 관련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의 사용권을 제공하고 수익을 받은 경우 재무부의 제103/2014/TT-BTC호 시행 규칙에 따라 외국인 계약자세가 부과된다.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사용을 위해 접속권을 부여한 활동은 지적재산 법령에 따라 지적재산권 이전 활동 또는 기술이전 법령에 따라 기술이전 활동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외국인 계약자의 수익은 VAT 면제되며 저작권에 대한 수익은 CIT 10%가 부과된다.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사용을 위해 접속권을 부여한 활동은 법령에 따라 지적재산권 이전 또는 기술이전 활동이 아닌 경우 외국인 계약자의 소득은 일반 서비스로 VAT 5% 및 CIT 5%가 부과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0년09월07일 제81424/CT-TTHT호OL)

베트남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한 FCWT

법령에 따라 베트남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은 제219/2013/TT-BTC호 시행 규칙 제4조 20항 규정에 의해 VAT이 부과되지 않는다.

외국인 계약자는 국제 운송, 환송, 국경 이전 또는 물품 보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세창고, 내륙항구 (ICD)를 물품보관창고로 사용할 경우 제103/2014/TT-BTC호 시행 규칙에 따라 FCWT가 부과되지 않는다.

현행 규정에 따라 외국인 계약자는 국경통과 방식으로 물품 소유권을 이전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 제103/2014/TT-BTC호 시행 규칙 제2조 5항 규정에 따라 FCWT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0년09월22일 제85109/CT-TTHT호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지침 문서

수출가공계약의 외주 가공품에 대한 수입세 면제

외국인 사업자와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는 베트남 기업 ("계약자")은 이와 관련 하도급계약을 발생하면 원자재료를 하도급 가공업체에게 전달하기 전에 관리 관세국에 통보할 책임이 있다.

계약자는 하도급 가공계약에 대해 관세국에 늦게 통보하고 하도급 가공자가 당사의 가공 시설로 상품을 가공. 납품한 후 가공품이 실제로 수출되면 계약자는 수입관세/VAT 간주를 면제되고 하도급 가공계약 및 가공시설에 대한 늦은 통보에 대해만 행정제재가 부과 된다.

하도급 가공업체가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계약자는 수입세, VAT 및 벌금이 부과된다.

(관세총국의 2020년 10월 21일 제 6774/TCHQ-TXNK호 OL)

재고 차이에 대한 수입세/ VAT 처리

플러스 차이 관련: 즉, 회사의 서류상 기록된 원자재 및 소모품 재고가 세관당국에 신고된 데이터보다 높음

수출가공기업 ("EPE")의 남은 원자재료가 창고에 보관되어 있고 국내 판매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 관세당국은 이해당 원자재에 대한 수입세 및 /또는 VAT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원자재의 상기 플러스 차이를 관리하는 목적으로 :

- 관세당국은 감사 시점에 플러스 차이가 발생한 원자재료를 통계하고; 및
- EPE는 플러스 차이가 발생한 원자재료의 사용현황, 생산품 수출에 대해 자세히 보고해야 한다.

기업은 해당 원자재료를 국내에서 자체 판매하거나 탈세, 세금 사기 행위가 있는 것으로 발견된 경우 관세당국은 규정에 따라 수입세 및 VAT를 부과한다.

마이너스 차이 관련: 즉, 회사의 서류상 기록된 원자재 및 소모품의 재고가 관세당국에 신고된 데이터보다 낮은 경우 해당 차이에 수입세 / VAT가 부과된다.

2020년 12월 5일부터 수출가공/제조용 수입 원부자재가 관세당국에 신고된 데이터와 대비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차이에 대한 세무처리는 정부의 2020년 10월 19일 제 126/2020/ND-CP호 시행령 제 17조에 따라 수행한다.

(관세총국의 2020년 10월 28일 제 6943/TCHQ-TXNK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지침 문서 (cont.)

EVFTA가 발효되기 전에 수출 상품에 대한 EUR.1양식으로 CO 신청 서류 검토

EVFTA의 발효일전에 24개월 이내에 수출된 화물의 경우 EUR.1 양식으로 C/O를 발행하는 기관 및 현지 수출입 부서는 EUR.1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신청자는 다음 정보를 충분히신고하고 제출해야 한다:

- 운송수단의 이름, 선박 또는 항공편 번호 및 출발일
-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상태 (적용된 경우)

EVFTA의 발효일전에 24개월 이상 수출된 화물에 대한 EUR.1양식으로 CO 신청서류의 경우 현지 수출입국은 (산업 통상부의) 수출입부서의 검토를 위해 보고해야 한다.

(관세총국의 2020년10월22일 제1056/2020/XNK-XXHH호 OL)

관세신고에 대한 흔히 오류

관세총국은 세관신고서의 검토를 통해 자주 발생한 오류를 다음과 같이 발견해 왔다:

1. 베트남 수출입 재화 목록에 따른 제품명 및 설명 기준을 충족하여 HS코드를 구분하기 위해 제품명, 성분, 속성, 구성, 함량 등은 충분히 신고되지 않았는데 통관이 승인된 물품;
2. 동일하게 설명되지 만 다른 HS코드로 통관 승인된 물품;
3. 재화 설명이 HS 코드와 일치하지 않지만 통관이 승인된 물품;
4. 관세총국에 의해 해당 HS코드에 대해 세무 안내하는 OL을 발행했는데 일부 관세국에서 지침에 따라 아직 수행하지 않은 경우;
5. HS 코드 신고, 일반 수출입표의 세율, FTA관세표가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은 경우;
6. 관세신고상 단위가 잘못 기술된 경우.

재화 분리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표준화하고 HS 코드의 일관적인 적용을 보장하며 상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관세청국은 위반 현상이 있는 재화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현지 관세국에 요청했다.

(관세총국의 2020년11월11일 제7203/2020/TCHQ-TXNK호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Suresh G Kumar
Tax Partner
+84 28 7101 4400
ksures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105 0023
ngavu@deloitte.com



Son Won Sik
KSG Director
+84 93 445 6850
wonsikson@deloitte.com



Kim Sun June
KSG Associate Director
+84 90 119 7014
sunjunkim@deloitte.com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Deloitt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About Deloitte Asia Pacific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Deloitte Vietnam Company Limited and its subsidiaries and affiliates.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 2020 Deloitte Vietnam Company Limited